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

세부사업명	축사시설	현대화사	업			세목		자치단 자본보				
내역사업명	우량송아	디생산비	육시설지원	4		예산 (백만원)	(보	조 500, 융	3,000 자2500)			
사업목적		-		ㅏ육시설을 기 실고급화 및	-		-		송아지를			
사업 주요내용	축사, 축사	시설 및	내부기자자	대 등 우량송	아지	생산비육시	l설 지	원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「자유무역 [·]		열에 따른	농어업인 등	의 제	지원에 관현	<u>-</u> 특별	!법」제5조				
지원자격 및 요건	한우암소검 법인 등	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, 육종농가, 브랜드 경영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										
지원한도				50%(500백민 2년차 사업의		추진 가능)						
재원구성(%)	국고	10	지방비	20	융	자 5	0	자부담	20			
			ı			ı		(단위 :	<u>백만원</u>)			
	구 분	20)17년	2018년		2019	년 	2020)년 			
연도별	<u>합</u> 계	5	,000	5,000		5,000)	4,50	00			
재정투입	국 고		500	500		500		450	0			
계획	지방비		,000	1,000		1,000		900				
	용 자		,500	2,500		2,500		2,25				
	자부담		,000	1,000		1,000)	900	<u> </u>			
담당	당기관		담딩	·과		담당자		연릭	<mark></mark> 처			
농림축산식품 자치단체	· 부 축산경영과 조재성 044-201-2332 축산관련과											
신청시기	정기(전년	도 10.31	일까지)		٨	⊦업시행기 ?	<u></u>	자치	단체			
관련자료	농림사업	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사업시행지침서						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한우: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,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, 브랜드 운영주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
- 육우 : 브랜드 운영주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, 육종농가, 브랜드 경영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 회사법인 등
 - *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훈령)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
 - * 농업인,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

3. 지워대상

○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(경영체)의 송아지생산비육시설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
- 축사, 축사시설, 방역시설 및 내부기자재(급이·급수·소독·환기시설, 온·습도 조절장치 등), 퇴비시설 및 관리사,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

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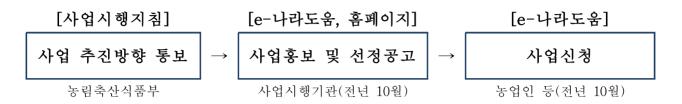
- 재원 : FTA기금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
- 조건 : 국고보조 10%, 국고융자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20%
- 융자조건 : 연리 2.0%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
- *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, 자부담 추진 가능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국고지원기준 : 보조 10%(100백만원), 융자 50%(500백만원)
- 국고지원한도 : 개소당 1.200백만원(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)
 - *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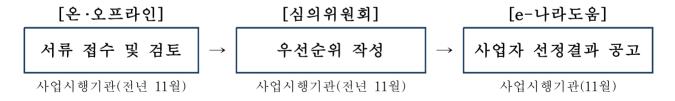
Ⅱ /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신청단계



-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
 -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
- 사업시행기관(시·도)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, 농식품사업의 교육·홍보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
-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(10.31일 까지)
 -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(사업계획서 등록)
 - * 제출서류
 - 사업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, 사업내용, 견적서 등),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, 토지이용계획 확인원, 신용조사서(별지 제2호서식) 및 관련 증빙서류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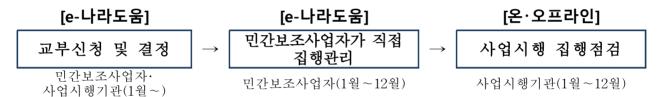
2. 사업자 선정단계



- 사업시행기관(시·도)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,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·검토
 -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
 - 농업인,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할 경우「농어업경영체법」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
 - 신청자의 재무안정성, 사업능력,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, 중복편중지원여부,
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

- 사업시행기관(시·도)에서는 사업내용 확인(현지실사 보고서) 및 심의
 - 선정기준표(별지 제3-1호 서식)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(별지 제 3-2호 서식)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(11.10일 까지)
 - * 관련증빙서류는 시 도지사가 보관(농림축산식품부 사본 제출)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,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
 -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·도별 대상자를 선정·통보(11.15일 까지)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 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,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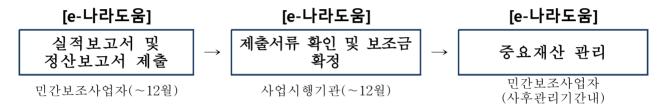
3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·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
-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
 - * (교부결정) 보조금 이월 및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
 - * (집행관리)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
 - * (계약) 1)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)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(위탁계약)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, 계약체결 등 수행
 - * (정산보고서 검증) 1)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)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
 - * (중요재산)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「보조금법」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
-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전표 등)를 등록 후 집행
 -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
- 융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
 - 사업시행기관(시·군협조)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,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

-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 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'부정집행 모니터링'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(10일 이내)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
 -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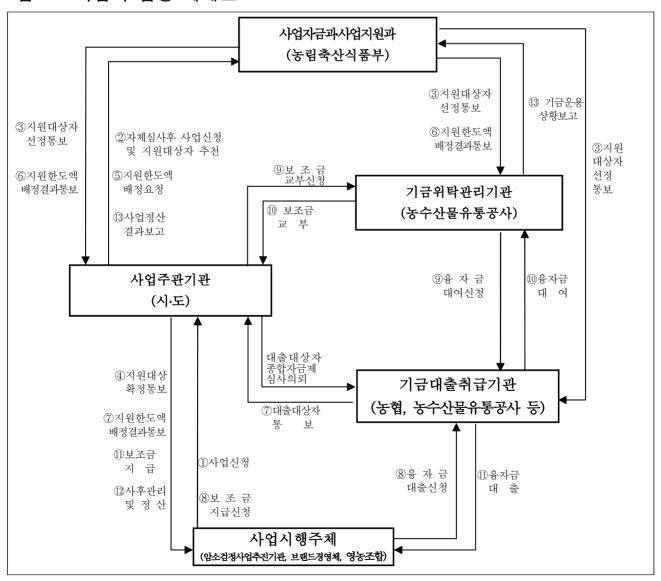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
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(정산보고)를 등록
 -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
 - *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(계약, 조달지연 등)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
 -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
 -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,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
 -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
-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
 - 중요재산의 현황은 「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」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
-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,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·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
-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.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
-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*를 확인한 경우「보조금법」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
 - *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(지급)받은 경우,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.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
 - 「기본규정」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, 폐·휴업, 사업포기,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「기본규정」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
 -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
-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가금, 수행배제,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·관리

<참고: 사업비 집행 체계도>



Ⅲ 평가 및 환류

1. 평 가

○ 평가주관기관 : 시·도(지자체)

○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: 2월말까지

○ 평가대상 : 지원 사업자

○ 평가기준 :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

-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[(당년말 등록우 두수-전년말 등록우 두수)/전년말 등록우 두수],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

·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 : 사업 추진정도 = 50 :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

*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

○ 자금 운용의 적정성(타 용도 사용 등 점검)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

2. 환 류

-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성과결과에 따라 조치여부 검토
-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
-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
-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
-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

《사업시행체계》

경영체, 법인 등		시・도		농림축산식품부
·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(10.1)	지원신청 → ← 지원/ 사후관리	·지원서 실사·확인 (농협 지역본부와 협조) ·농림축산식품부 추천 (10.15)	추천 → √ 지도/ 조정	• 현지실사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• 사업대상자 심의 • 선정 (10.31)
·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(서식 "추후 통보")	제출 → ← 통보/ 사후관리	·보고서 검토·확인 후 제출	제출 → ← 통보/ 사후관리	・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(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)

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계획서

- 1. 사업자
 - 사업자명 :
 - 사업자 등록번호 :
 - 사업자 주소 :
 - 조직체명 :
 - 주소 :
- 2. 사업 경영체 현황
 - O 법인 현황: 설립일, 회원수, 전담직원수(직책 및 인원수)
 - O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: 총 두
 - 비육 두, 번식 두, 송아지 두
 - 1등급 출현율 : 출하 두, 1등급 출현 두(%)
 - O 연간 매출액:
 -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

(단위 : 두)

구 분	'18	'19	'20	'21
고등 등록우 두수				

3. 사업계획

(단위: 백만원)

							사업비									
구분	세부내용			00년					00년					계		
		보조	융자	지방비	재담	계	보조	융자	지방비	재담	계	보조	융자	지방비	재담	계
축사																
기자재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

- *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
- 현재 시설현황(동수 및 축사면적 등) : 시설이 있는 경우
- O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:
- 첨부 : 평면도, 견적서 등
- 연차별 상환계획
- 4. 사업 추진 일정

세부내용					י00	년도	(1년	차)					00년도(2년차)											
게구네공	1	2	3	4	5	6	7	8	9	10	11	12	1	2	3	4	5	6	7	8	9	10	11	12

- 주)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
- 5. 별첨 : 기타 관련 증빙자료(사본 가능)

신용조사서

1.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

(년 월 일 기준)

주 소					전 화 (번호 -)
생산자단체등· 회사.기타명칭		사업자 등록번호		대표자 (성명)		(인)
신청사업명						
소요사업비	총액	천원 보조	대 출 신 청		자 담	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ĭ	과거 1년	간 연체사실	부도 또는 다	내위변제사실		신용상태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ਜੰ	무	양호	보통	불량

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대출구분	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신 용			천원		
신용보증					
後取담보					
先取담보					

4. 종합의견

년 월 일

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

(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)

□ 참여 경영체명 :

□ 신청자명 :

평 가 항 목	세 부 기 준	배점	득점	비고
	○2,000두이상	60		*'18.4.1일 기준 현재
고등 등록우	○1,500두이상~2,000두미만	50		*증빙서류 확보
보유 두수	○1000두이상~1,500두미만	40		(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)
(60)	○500두이상~ 1,000두미만	30		*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
	○500두미만	20		*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
	○30,000두이상	50		
사육규모	○20,000두이상~30,000두미만	40		*'18.4.1일 기준 현재
(50)	○10,000두이상 [~] 20,000두미만	30		*증빙서류 확보
	○5,000두이상~10,000두미만 ○5,000두미만	20 10		(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)
	, , , ,	10		TIVCCD-J2J EJ VJ-JQ
	○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(비율에 따라 배점)			*HACCP지정 및 신청은 (사)축산물 HACCP 기
HACCP 관련	게구 5/F 미필(미필에 따다 매점) -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			(사)독선물 NACCE 기 준원의 지정에 한함
(10)	/ 회원농가 사육두수×100×0.1			*지정서, 신청서, 계약서
	*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시육두수			등 증빙서류 확보
	○사업부지가 선정되고, 주민동의과	30		0 0 0 111 1-
	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			
	│ 려가 없는 경우 ○사업부지가 선정되고, 주민동의과	20		
	· 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	20		*신청시점 기준
추진 가능성	전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○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	1.0		*신청시점 기준 *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,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 빙서류 등
(30)	□사업무시는 선성되시 않았으나, 수 - 미동의과정 등의 정차를 거쳐 미	10		공무원 확인서 등 증
	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			병서류 능
	○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, 주민동 - 이고전 도인 전치기 엄시 미인바	0		
	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 생이 불확실한 경우			
		농림축산		
الحالجة الم	○정부(시·구·구 시·도 농림축산식	농림축산 식품부		*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
수상경력 (30)	○정부(시·군·구, 시·도, 농림축산식 품부 등)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	(또는 중앙관서)		*생산과 관련되지 않은
(50)	된 표창, 포상 등을 받은 경우	30		표창, 포상 등은 제외
		시도 10		
브랜드	○5,000두 이상	20		*'18.4.1일 기준 현재
글 앤드 출하두수	○5,000두 이상 ○4,000두 이상 ~ 5,000두 미만 ○3,000두 이상 ~ 4,000두 미만	15		* 등 당시 ㅠ 꼭 모 (시군구 공무워 확인서 등)
(20)	○3,000두 이상 ~ 4,000두 미만 ○3,000두 미만	10 5		*증빙서류 확보 (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) *연간공급능력 고려 *축산물품질평기원 확인서류
-1) (C.C.C.)				*숙산돌품실병/1원 왁인서듀
계(200)				

주) 관련 증빙서류 첨부, 미첨부시는 0점 처리

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

(시·도지사 작성용)

□ 우선순위표

					평	가 점	수		
연 번	경영체명	농장소재지	고등 등록우	사육 규모	HACCP	추진 가능성	수상	브랜드 출하	계
			보유두수 (60)	(50)	(10)	(30)	(30)	두수 (20)	(200)
1			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계									

○ 작성자 : 부서명 , 직함 , 성명

- 연락처 : 사무실 , Mobile

※ 작성방법: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

사업 신청 경영체 시·도지사 의견서

			검토항목 적	정성 여부	
순위	경영체명	인·허가에 따른 사업일정	민원여부	융자실행 가능성	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;					
계					

주1)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, 지원내용, 지원한도액(지원조건 비율, 축사면적당(m²) 최대 지원한도액,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),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) 적합여부는 적합, 보통,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

위와 같이「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」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시·도지사(인)

<별지 제4호 서식>

()분기 추진실적(완료) 보고

□ 사업개요

- 사업자 성명(사업기관 명) :
- 주소 :
- □ 추진(완료)내용

(단위: 백만원)

			λÌ	- 업	라				入	}	날 날	1]				
구 분	사업	사업계획		ㅂ	ें ज		ブ]] 3	틱			کر ت	<u>]</u> 2	덕		В/А
' '	자명	/ /	계획	실적	%	계	보	융	지	자	계	보	융	지	자	
			/ 11 - 1	근기	70	(A)	조	자	방	담	(B)	조	자	방	담	
		•축사시설														
		:														
		∘퇴비사														
		:														
		•관리사														
		:														
		•전기시설														
		:														
		•용수시설														
		:														
	소	계														

※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(대출액) 기준으로 작성

□기타

• 사업완료시 건축물·시설 사진, 건축물 준공허가서류, 등기서류,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

【 참고 :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】

구 분

작성 및 제출서류

사업대상 경영체

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,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,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, 토지이용계획 확인원, 신용조사서 등



시·도

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,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,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, 사업신청 경영체 시·도지사 의견서,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, 토지이용계획 확인원,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* 원본은 시·도지사가 보관



농 림 축 산 식 품 부